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9052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5. 22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이학영 · 차지호  
강준현 · 한정애 · 김원이  
김남근 · 이기현 · 김준환  
박홍배 · 최혁진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음.

그런데 이스포츠 산업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산업이 이스포츠 문화와 연계하여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이스포츠의 보급·연구·전시 등을 수행할 ‘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’을 조성하고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‘이스포츠진흥재단’을 설립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임.(안 제16조 및 제17조).



##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로 하고, 제16조,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(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의 설립) ① 국가는 이스포츠 종주국의 위상 제고 및 이스포츠의 교류·보급·홍보·전시 등을 위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- 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그 밖에 박물관의 조직과 운영,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) ① 박물관의 조성·운영 및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

2. 박물관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
  3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  4. 이스포츠 보급·홍보에 관한 사업
  5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 6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국가는 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- ⑦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16조(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의 설립)</u></p> <p><u>① 국가는 이스포츠 종주국의 위상 제고 및 이스포츠의 교류·보급·홍보·전시 등을 위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u></p> <p><u>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.</u></p> <p><u>③ 그 밖에 박물관의 조직과 운영,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17조(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)</u></p> <p><u>① 박물관의 조성·운영 및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u></p> <p><u>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</u></p>  |

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

2. 박물관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

3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
4. 이스포츠 보급·홍보에 관한 사업

5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6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⑥ 국가는 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⑦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 |
| <p><u>제16조</u>(청문) (생략)</p>        | <p><u>제18조</u>(청문) (현행 제16조와 같음)</p>   |
| <p><u>제17조</u>(권한의 위임·위탁) (생략)</p> | <p><u>제19조</u>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 17조와 같음)</p>   |
| <p><u>제18조</u>(포상) (생략)</p>        | <p><u>제20조</u>(포상) (현행 제18조와 같음)</p>   |